

1. 개정이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광물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참여가 저조하여 광물 분야 융자 지원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대 융자비율과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정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해외광물개발사업에 융자심의 시가점을 부여하여 민간의 핵심광물 해외개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정한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최대 융자비율을 해당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상향하고, 현행 규정에 열거된 핵심광물의 종류를 동법에서 정한 핵심광물로 일괄 인용하도록 함(안 별표 2)

나.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종료되거나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특별융자금 의무상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지원되는 핵심광물 사업의 의무상환비율을 특별융자금의 20%에서 10%로 하향하여 사업 실패 시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함(안 제9조의 2 및 별표 5 신설, 부칙)